
2020년 상반기

지역별·의료기관 종별 개시 현황

2020. 7.



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

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

순서

I. 산출 기준	1
II. 지역별 · 의료기관 종별 개시 현황	2
II-1. 전체 사건	2
II-2. 일반 사건	3
III. 용어 정의	4

I. 산출기준

□ 산출 기준

- 본 통계 자료는 2020. 1. 1. ~ 2020. 6. 30.까지 접수된 사건 중 절차 참여 여부 확인까지 완료된 사건 기준
- 각 통계표상 표시된 지역은 의료기관의 소재지 기준이며, 기준 및 단위는 오른쪽 위에 표시함. 부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

- '-': 해당사항 없음 또는 발생하지 않음

- '일반 사건'은 피신청인에 대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묻는 사건에 대한 통계(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8항, 이하 의료분쟁조정법)이며, '전체 사건'은 위 일반 사건과 조정신청의 대상이 일부 요건*을 갖출시 절차가 바로 개시되는 사건(「의료분쟁조정법」 제27조제9항)의 계수를 합친 통계임

*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II. 2020년 지역별·의료기관 종별 개시 현황

II-1. 전체 사건

(2020.1.1. ~ 2020.6.30.(접수일) 기준, 단위: 건, %)

구분		계	상급 종합 병원	종합 병원	병원	의원	치과 병원	치과 의원	한방 병원	한의원	요양 병원	약국	보건소 ·지소
계	개시	663	163	195	109	102	5	51	4	11	23	-	-
	각하	341	44	74	62	116	3	29	1	7	5	-	-
	개시율	66.0	78.7	72.5	63.7	46.8	62.5	63.8	80.0	61.1	82.1	-	-
서울	개시	207	78	33	27	42	-	19	3	4	1	-	-
	각하	131	24	24	21	43	2	11	1	4	1	-	-
	개시율	61.2	76.5	57.9	56.3	49.4	0.0	63.3	75.0	50.0	50.0	-	-
경기	개시	119	16	43	22	22	1	8	-	1	6	-	-
	각하	67	5	18	13	18	-	9	-	2	2	-	-
	개시율	64.0	76.2	70.5	62.9	55.0	100.0	47.1	-	33.3	75.0	-	-
인천	개시	40	7	20	7	3	-	0	-	1	2	-	-
	각하	15	3	4	-	5	-	3	-	-	-	-	-
	개시율	72.7	70.0	83.3	100.0	37.5	-	0.0	-	100.0	100.0	-	-
부산	개시	71	14	20	21	9	-	4	-	-	3	-	-
	각하	33	2	7	8	13	-	2	-	-	1	-	-
	개시율	68.3	87.5	74.1	72.4	40.9	-	66.7	-	-	75.0	-	-
경남	개시	43	12	12	6	4	2	4	-	-	3	-	-
	각하	22	0	9	7	4	1	0	-	-	1	-	-
	개시율	66.2	100.0	57.1	46.2	50.0	66.7	100.0	-	-	75.0	-	-
울산	개시	9	-	5	1	1	-	-	-	2	-	-	-
	각하	4	-	-	1	3	-	-	-	-	-	-	-
	개시율	69.2	-	100.0	50.0	25.0	-	-	-	100.0	-	-	-
대구	개시	29	11	4	7	1	2	2	-	-	2	-	-
	각하	19	4	1	5	7	-	2	-	-	-	-	-
	개시율	60.4	73.3	80.0	58.3	12.5	100.0	50.0	-	-	100.0	-	-
경북	개시	20	-	12	3	2	-	-	-	1	2	-	-
	각하	7	-	1	-	6	-	-	-	-	-	-	-
	개시율	74.1	-	92.3	100.0	25.0	-	-	-	100.0	100.0	-	-
광주	개시	16	5	4	4	-	-	1	-	-	2	-	-
	각하	6	1	1	1	3	-	-	-	-	-	-	-
	개시율	72.7	83.3	80.0	80.0	0.0	-	100.0	-	-	100.0	-	-
전북	개시	18	3	5	1	4	-	5	-	-	-	-	-
	각하	7	-	-	3	3	-	-	-	1	-	-	-
	개시율	72.0	100.0	100.0	25.0	57.1	-	100.0	-	0.0	-	-	-
전남	개시	15	2	7	5	1	-	-	-	-	-	-	-
	각하	5	-	2	2	1	-	-	-	-	-	-	-
	개시율	75.0	100.0	77.8	71.4	50.0	-	-	-	-	-	-	-
제주	개시	6	-	3	-	-	-	2	-	-	1	-	-
	각하	2	-	1	-	1	-	0	-	-	0	-	-
	개시율	75.0	-	75.0	-	0.0	-	100.0	-	-	100.0	-	-
대전	개시	27	6	12	3	3	-	1	1	1	-	-	-
	각하	9	4	4	0	1	-	-	-	-	-	-	-
	개시율	75.0	60.0	75.0	100.0	75.0	-	100.0	100.0	100.0	-	-	-
충남	개시	17	5	2	1	5	-	3	-	-	1	-	-
	각하	5	-	-	-	4	-	1	-	-	-	-	-
	개시율	77.3	100.0	100.0	100.0	55.6	-	75.0	-	-	100.0	-	-
충북	개시	9	2	2	1	3	-	-	-	1	-	-	-
	각하	7	1	2	1	2	-	1	-	-	-	-	-
	개시율	56.3	66.7	50.0	50.0	60.0	-	0.0	-	100.0	-	-	-
세종	개시	2	0	0	0	2	0	0	0	0	0	-	-
	각하	1	0	0	0	1	0	0	0	0	0	-	-
	개시율	66.7	-	-	-	66.7	-	-	-	-	-	-	-
강원	개시	15	2	11	0	0	0	2	0	0	0	-	-
	각하	1	0	0	0	1	0	0	0	0	0	-	-
	개시율	93.8	100.0	100.0	-	0.0	-	100.0	-	-	-	-	-

* 개시율 : 개시건수 ÷ (개시건수 + 각하건수) × 100

II-2. 일반 사건

(2020.1.1. ~ 2020.6.30.(접수일) 기준, 단위: 건, %)

구분		계	상급 종합 병원	종합 병원	병원	의원	치과 병원	치과 의원	한방 병원	한의원	요양 병원	약국	보건소 · 지소
계	개시	433	82	111	79	88	5	50	4	11	3	-	-
	각하	341	44	74	62	116	3	29	1	7	5	-	-
	개시율	55.9	65.1	60.0	56.0	43.1	62.5	63.3	80.0	61.1	37.5	-	-
서울	개시	144	43	17	18	40	0	19	3	4	0	-	-
	각하	131	24	24	21	43	2	11	1	4	1	-	-
	개시율	52.4	64.2	41.5	46.2	48.2	0.0	63.3	75.0	50.0	0.0	-	-
경기	개시	70	6	17	17	20	1	8	0	1	0	-	-
	각하	67	5	18	13	18	0	9	0	2	2	-	-
	개시율	51.1	54.5	48.6	56.7	52.6	100.0	47.1	-	33.3	0.0	-	-
인천	개시	30	3	17	6	3	0	0	0	1	0	-	-
	각하	15	3	4	0	5	0	3	0	0	0	-	-
	개시율	66.7	50.0	81.0	100.0	37.5	-	0.0	-	100.0	-	-	-
부산	개시	44	7	9	16	7	0	4	0	0	1	-	-
	각하	33	2	7	8	13	0	2	0	0	1	-	-
	개시율	57.1	77.8	56.3	66.7	35.0	-	66.7	-	-	50.0	-	-
경남	개시	32	8	9	6	2	2	4	0	0	1	-	-
	각하	22	0	9	7	4	1	0	0	0	1	-	-
	개시율	59.3	100.0	50.0	46.2	33.3	66.7	100.0	-	-	50.0	-	-
울산	개시	8	0	4	1	1	0	0	0	2	0	-	-
	각하	4	0	0	1	3	0	0	0	0	0	-	-
	개시율	66.7	-	100.0	50.0	25.0	-	-	-	100.0	-	-	-
대구	개시	19	5	2	6	1	2	2	0	0	1	-	-
	각하	19	4	1	5	7	0	2	0	0	0	-	-
	개시율	50.0	55.6	66.7	54.5	12.5	100.0	50.0	-	-	100.0	-	-
경북	개시	9	0	7	1	0	0	0	0	1	0	-	-
	각하	7	0	1	0	6	0	0	0	0	0	-	-
	개시율	56.3	-	87.5	100.0	0.0	-	-	-	100.0	-	-	-
광주	개시	9	2	2	4	0	0	1	0	0	0	-	-
	각하	6	1	1	1	3	0	0	0	0	0	-	-
	개시율	60.0	66.7	66.7	80.0	0.0	-	100.0	-	-	-	-	-
전북	개시	12	1	4	1	2	0	4	0	0	0	-	-
	각하	7	0	0	3	3	0	0	0	1	0	-	-
	개시율	63.2	100.0	100.0	25.0	40.0	-	100.0	-	0.0	-	-	-
전남	개시	6	1	3	2	0	0	0	0	0	0	-	-
	각하	5	0	2	2	1	0	0	0	0	0	-	-
	개시율	54.5	100.0	60.0	50.0	0.0	-	-	-	-	-	-	-
제주	개시	4	0	2	0	0	0	2	0	0	0	-	-
	각하	2	0	1	0	1	0	0	0	0	0	-	-
	개시율	66.7	-	66.7	-	0.0	-	100.0	-	-	-	-	-
대전	개시	16	2	7	1	3	0	1	1	1	0	-	-
	각하	9	4	4	0	1	0	0	0	0	0	-	-
	개시율	64.0	33.3	63.6	100.0	75.0	-	100.0	100.0	100.0	-	-	-
충남	개시	11	2	1	0	5	0	3	0	0	0	-	-
	각하	5	0	0	0	4	0	1	0	0	0	-	-
	개시율	68.8	100.0	100.0	-	55.6	-	75.0	-	-	-	-	-
충북	개시	5	0	1	0	3	0	0	0	1	0	-	-
	각하	7	1	2	1	2	0	1	0	0	0	-	-
	개시율	41.7	0.0	33.3	0.0	60.0	-	0.0	-	100.0	-	-	-
세종	개시	1	0	0	0	1	0	0	0	0	0	-	-
	각하	1	0	0	0	1	0	0	0	0	0	-	-
	개시율	50.0	-	-	-	50.0	-	-	-	-	-	-	-
강원	개시	13	2	9	0	0	0	2	0	0	0	-	-
	각하	1	0	0	0	1	0	0	0	0	0	-	-
	개시율	92.9	100.0	100.0	-	0.0	-	100.0	-	-	-	-	-

* 개시율 : 개시건수 ÷ (개시건수 + 각하건수) × 100

II. 용어 정의

① 의료분쟁 관련 용어 정의

○ 조정

-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하도록 하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 이끄는 절차를 말하며, 재판 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(「의료분쟁조정법」 제36조)

○ 중재

-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(私法) 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며,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(「의료분쟁조정법」 제44조)

○ 조정 절차 개시

-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의료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가 개시되고,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조정 신청을 각하함(「의료분쟁조정법」 제27조제8항)
- 다만, '16.11.30. 이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로 조정신청의 대상이 사망, 1개월 이상 의식 불명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1급의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에 조정절차는 개시됨

② 보건의료기관 종별 유형 정의

○ 상급종합병원

-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

1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

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

2. 「의료법」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
3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·시설·장비 등을 갖추는 것
4.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(「의료법」 제3조의4제1항 및 「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」 제2조 및 별표)

○ 종합병원

-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병원을 말함

1.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는 것
2.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·외과·소아청소년과·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, 영상의학과,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
3.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, 외과, 소아청소년과, 산부인과, 영상의학과, 마취통증의학과,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,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(「의료법」 제3조의3제1항)

○ 병원

-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환자를 진찰,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, 시설, 장비를 갖추어 놓은 곳(「의료법」 제3조의2)

○ 치과병원

-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환자를 진찰,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, 시설, 장비를 갖추어 놓은 곳 중 주된 진료과목이 치과인 곳(「의료법」 제3조의2)

○ 한방병원

-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환자를 진찰,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, 시설, 장비를 갖추어 놓은 곳 중 주된 진료과목이 한의과인 곳(「의료법」 제3조의2)

○ 요양병원

- 30개 이상의 요양병상(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)을 갖추고 환자를 진찰,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, 시설, 장비를 갖추어 놓은 곳(「의료법」 제3조의2)

○ 의원

- 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(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)

○ 치과의원

- 치과 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(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)

○ 한의원

-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(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)

○ 약국

-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[약국제제(藥局製劑)를 포함한다]를 하는 장소(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)를 말함. 다만, 의료기관의 조제실을 예외로 함(「약사법」 제2조제3호)

○ 보건소(보건지소)

- 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의 시·군·구 단위에 설치된 보건행정기관으로서, 보건소의 지소를 보건지소라 함(「지역보건법」 제10조)

○ 보건의료원

- 보건소 중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를 말하며, 보건소 업무에 진료 및 입원기능을 특화한 것으로 주로 의료취약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여 설치·운영함(「지역보건법」 제8조)